

Ⅶ. 재승인 의결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 의결 보류(2014. 3. 17.)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4 - 11 - 47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4. 3. 17.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4. 3.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

< 2014. 3. 17. (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1> 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1. 3~4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 승인
※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연합뉴스티브이('11.3.30) / (주)채널에이('11.4.20)
- '13. 9. 5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3. 9.30 재승인 신청서 접수(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티브이)
- '13.10.21 재승인 신청서 접수(주)채널에이)
- '13.11.29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 게재,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자막으로 공지
* '14.11.29~12.30까지 총 24건 접수
- '14. 3.10~14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총 5일 간)
* 심사기간 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14.3.12)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총 15인)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 야	성 명	현 직	추천인
심사위원장	오 택 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방송(3인)	류 춘 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통위원
	최 진 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하 주 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부기관
법률(3인)	김 병 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기관
	안 정 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외부기관
	이 상 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외부기관
경영·회계 (3인)	류 길 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방통위원
	배 기 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기관
	이 청 룡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부기관
기술(2인)	박 승 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방통위원
	차 지 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외부기관
시청자·소비자 (3인)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황 선 옥	소비자 시민모임 부회장	방통위원

나. 운 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4. 3. 10. ~ 3. 14. (총 5일)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3. 10일 (월)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3. 11일 (화)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의견청취 준비 등
3. 12일 (수)	사업자별 의견청취, 재승인 신청서류 및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
3. 13일 (목)	계량평가결과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3. 14일 (금)	심사의견서 의결

5. 심사평가 결과

○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음

- 총점 1,000점 만점 중 (주)조선방송 684.73점, (주)제이티비씨 727.01점, (주)채널에이 684.66점, (주)연합뉴스티브이 719.76점 획득

※ 재승인기준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 종편/보도)	(주) 조선방송	(주)제이 티비씨	(주) 채널에이	(주)연합뉴 스티브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273.35 (78)	279.82 (80)	271.30 (78)	277.63 (79)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131.19 (57)	141.38 (61)	127.21 (55)	188.12 (67)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103.18 (64)	119.59 (75)	108.00 (68)	93.86 (72)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47.28 (59)	48.96 (61)	47.20 (59)	28.81 (58)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45.03 (75)	47.65 (79)	45.40 (76)	42.50 (71)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21.79 (73)	23.29 (78)	21.87 (73)	13.98 (7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15.26 (76)	15.86 (79)	15.39 (77)	29.25 (73)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51.65 (74)	54.46 (78)	52.29 (75)	51.21 (73)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 4.00	- 4.00	- 4.00	- 5.60
합 계	684.73	727.01	684.66	719.76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가. 종합소견

-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이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이 필요함
-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종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제작 편성비율과 주시청시간대 외주 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음

나.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의견

- (주)조선방송) 계획 대비 0% 투자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주)제이티비씨)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채널에이)**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동일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연합뉴스티브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책 건의사항

-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평가에 반영
 -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필요
-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 마련 필요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 랩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검토 의견

-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재승인 대상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 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붙임1> 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함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부분 과 관련하여 이행계획과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함
 - 이행실적 점검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함

8. 향후 계획

- '14. 3월 중 승인장 교부
- '14. 3월 말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4. 5월 중 재승인 백서 발행
- '14년 하반기 재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연중)

-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재승인 조건	○ (공통)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공통)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정 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사항	○ (공통)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을 준수할 것 ○ (주)조선방송)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주)연합 뉴스 티브이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사항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붙임2)

2014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4.3.31.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3개사와 2014.4.21.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3. 14.(금)

1. 종합소견

- (사업계획 이행실적)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분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등 방송사업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
 - 종편 3사의 재방비율이 높으며, JTBC를 제외하고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음
 - 다만, 국내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음
- (공적책임 및 공정성) 종편 3사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전략 수립과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 자체 심의 능력 강화를 위해 외부제작자를 포함한 방송인력의 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자체교육, 연수, 파견 및 외부 기관에서의 정기적 연수제도 운용 등)
-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 전략 등 향후 사업 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보임
- 다만 국내외 경제 상황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액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방송법상 3~5년간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 실적 점검 필요

2.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의견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주)조선방송	○ 계획 대비 ○%대의 투자실적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균형 있는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3년간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추어 향후 5년간 예측 광고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 의문 ○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작시스템 구축 필요 ○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투자계획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투자계획이 미흡 ○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주)제이티비씨	○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청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루어져야 함 ○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 보도 담당 사장에게 인사권과 편집권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됨 ○ 재승인 신청서상 사업계획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상증자 성공이후에도 사업계획 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주)채널에이	○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인신공격과 막말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 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 제도의 효과가 의문시 됨 ○ 채널A의 방송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종편들과의 차별된 특성이나 투자 의욕이 보이지 않고 시사·보도에 의존하는 전략에 안주하는 것으로 보임 ○ 재승인 신청서상 광고 매출액(○○○○년 ○원, ○○○○년 ○원)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임 ○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시청자 권리보호 위원회의 권리침해 구제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주)연합뉴스티브이	○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 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국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기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 금액이 ○%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뉴스Y가 재승인 기간 중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서 환경설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IT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위성수신 시스템이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승인 신청서에는 해외진출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콘텐츠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심의제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 민원을 해결하고 심의제재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엄격히 시행할 것 ○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르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종편 사업자의 취지에 맞도록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고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

○ 개별사항

구분	내용
(주)조선방송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제이티비씨	○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주)채널에이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4. 정책 건의사항

☐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평가에 반영
-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필요

☐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

-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 사항

-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 마련 필요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마련

-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 사업자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렐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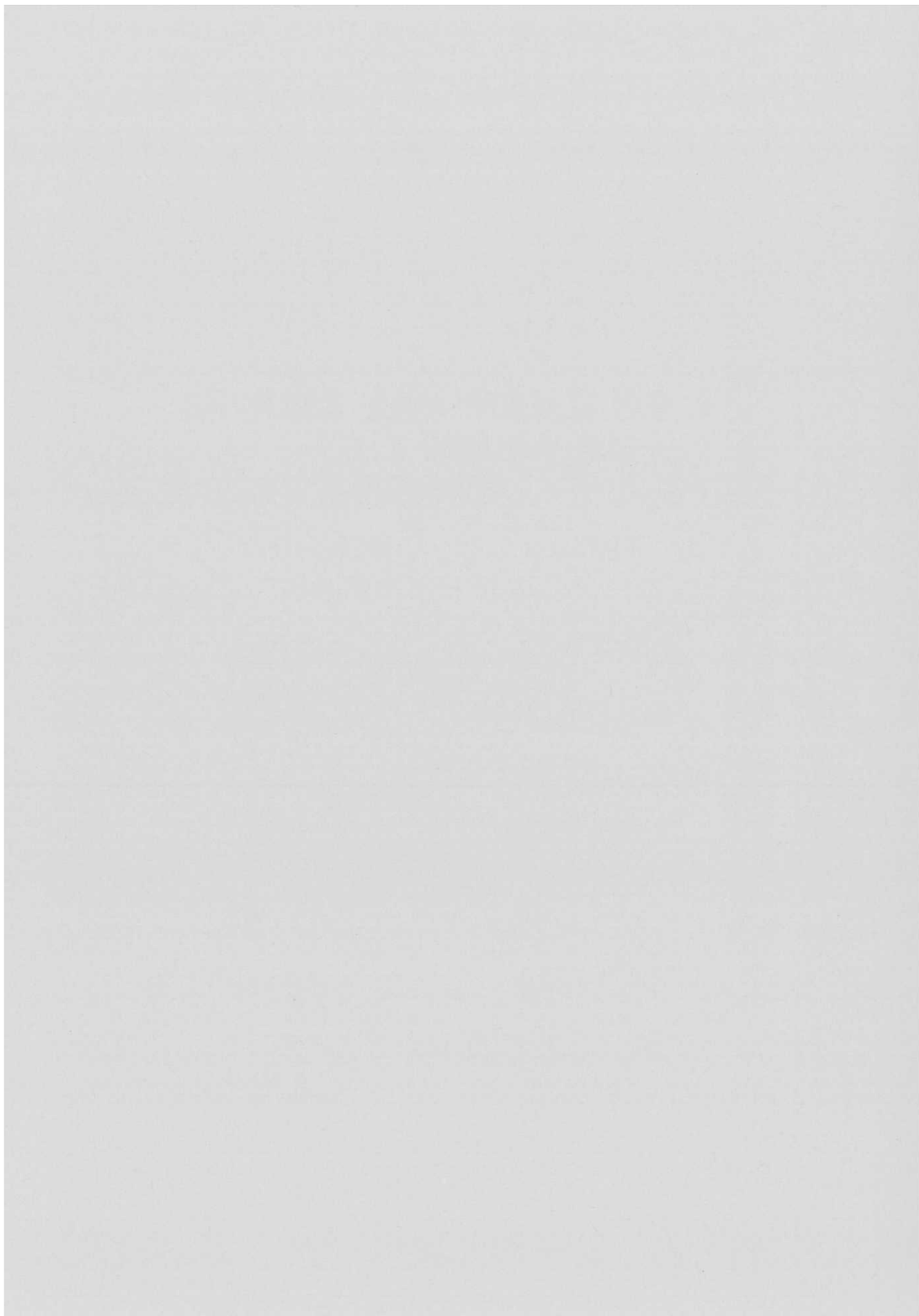
(붙임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종편/보도)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35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350점/35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35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 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등 권익보호 (230/28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140점/18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45점/6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95점/120점)
	시청자 권익보호 (70점/80점)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25점/25점)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점/55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20점/20점)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20점/20점)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감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감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160/130)	기획·편성의 적절성 (70점/60점)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25점/20점)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점/40점)
	수급의 적절성 (50점/35점)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점/10점)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점/25점)
	제작·협력의 적절성 (40점/35점)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점/10점)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점/25점)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재정적 능력(65점/40점)	부채비율(25점/15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15점)
		총자산증가율(20점/10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기술적 능력(15점/10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5점/5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10점/5점)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30점/30점)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점/10점)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점/20점)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점/15점)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5점/5점)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10점/10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점/1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5점/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10점/10점)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이행여부 (30/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30점/2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10점/5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20점/15점)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20점/4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5점/15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점/25점)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70)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점/70점)	승인조건 이행실적의 적정성 (70점/70점)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감점)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의결 보류(2014. 3. 17.)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3. 17(월)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2014-11-047)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을 말씀 드리면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은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방송분야 3인, 법률분야 3인, 경영·회계 분야 3인, 기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지난주 3월 10일~3월 14일까지 총 5일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별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습니다. 총점 1,000점 만점 중 (주)조선방송 684.73점, (주)제이티비씨 727.01점, (주)채널에이 684.66점, (주)연합뉴스티브이 719.7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재승인 기준은 지난 9월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고,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의 심사사항별 평가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소견을 말씀 드리면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따라서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이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이 필요함, 또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중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제작 편성비율과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업자별 주

요 평가의견입니다. 먼저 (주)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주)제이티비씨입니다.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음은 (주)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 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차후 평가에 반영,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입니다.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관련입니다.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렐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붙임1>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승인 조건의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행계획과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행실적 점검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승인 제도 개

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에 승인장을 교부하고 5월 중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1> 중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3사 모두 공통으로 재승인 조건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네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섯 번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여섯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사 모두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을 준수할 것이며,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그리고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한 것, 그리고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 최대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그리고 권고사항으로는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내온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참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무처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도 이제는 없다, 어떻게 기자보다 상임위원이 결과를 늦게 알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 상임위원은 회의 직전에 페이퍼 보고 알고, 기자들은 내용들 다 알고, 정말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종편 허가 대상을 결정할 때도 상임위원은 모르고 기자들은 다 알고, 저는 도대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회의 앞두고 30분 전에 브리핑하고 그것을 바로 의결하겠다는 사무처의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면 작년 9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실 때...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보안을 유지했는데 상임위원들은 가장 늦게 알고, 그다음에 30분 전에 브리핑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이 보안 때문이었지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저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 내용들을 좀 더..., 4년 전 사업계획서와 이번 사업계획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께서 읽었던 사업계획서라 함은 이번에 낸 사업계획서이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가 도대체 편성비율을 몇 퍼센트로 했는지, 그다음에 투자계획을 얼마나 잡았는지 상임위원들 일절 모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대답만 해 보십시오. 보고를 안 했으니까 상임위원들 일절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조건부에는 권고사항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매반기, 매분기, 매년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잡힐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로 끝내고 상임위원들이 좀 더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심사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10분 전에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무국의 일 처리는 방통위원회 체제를 고무도장이거나 거수기처럼 생각하는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애당초에 심사위원단 구성 자체도 상임위원 5명이 책임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편 옹호론에 가까운 사람들을 외부 추천이라는 이유로 반을 잘라내서 '14명 가운데 7명만 상임위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은 여당 추천위원 쪽에서 정합니다. 3명을 하려 합니다' 이런 식의 기본구도 자체가 결국은 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어나 했다가 결국은 역시나 하는 결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갖 도착한 이 자료를 보지만, 이 자료조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9시 반 티타임에 자료 좀 잠시 내밀고, 그리고 심사의견서는 회의 중간에 갖다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인지, 상임위원

들은 사무국이 정해 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심사위원들로 가득 찬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법적으로 완성이나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의 미진입니다. 방통위의 심의 미진으로 이것을 의결한다면 결국은 퇴임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위원님별로 충실한 심의가 거처진 연후에 재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위원들보다 빨리 알았다고 양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도 사무처가 지난 주말에, 일정을 보면 이것이 금요일에 대략 정리가 됐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주말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더라면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워낙 기자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보시면 심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심사를 해 왔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재허가 보류, 또는 재허가 불허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번, <3>번이 과락이 있는 것이지요? 과락이 40점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과락이 50%이고, 다른 항목은 40%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50%로 보더라도 그것을 다 상당히 여유 있게 상회하는 정도이고 과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 보류할 특별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우리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관심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비율을 나누어서까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의결 보류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방송 관련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저는 정회를 한 번 거치더라도 오늘 의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상임위원보다 기자가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무국에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전에 실무를 담당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결과를 빨리 알고자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사무국을 도와주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안이 자꾸 새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단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두 분 야당 상임위원들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심사를 열심히 하고 또 전문 심사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시다만 여기에 조건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송의 허가장에 붙여 왔던 줄줄이 달린 조건들이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규정에 다 있는 것들을 다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 물론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조건의 의미에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일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업자들이 새롭게 내놓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옛날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심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선임하던 것보다는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추천을 절반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여측에서 네 사람, 야측에서 세 사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사임을 표시했고, 다시 위원회 간담회에서 야측 위원들의 추천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외부 추천기관에서 했지만 본인들이 시간상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후에 결정될 때까지 상임위원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언론에 심사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언론인들이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처음 들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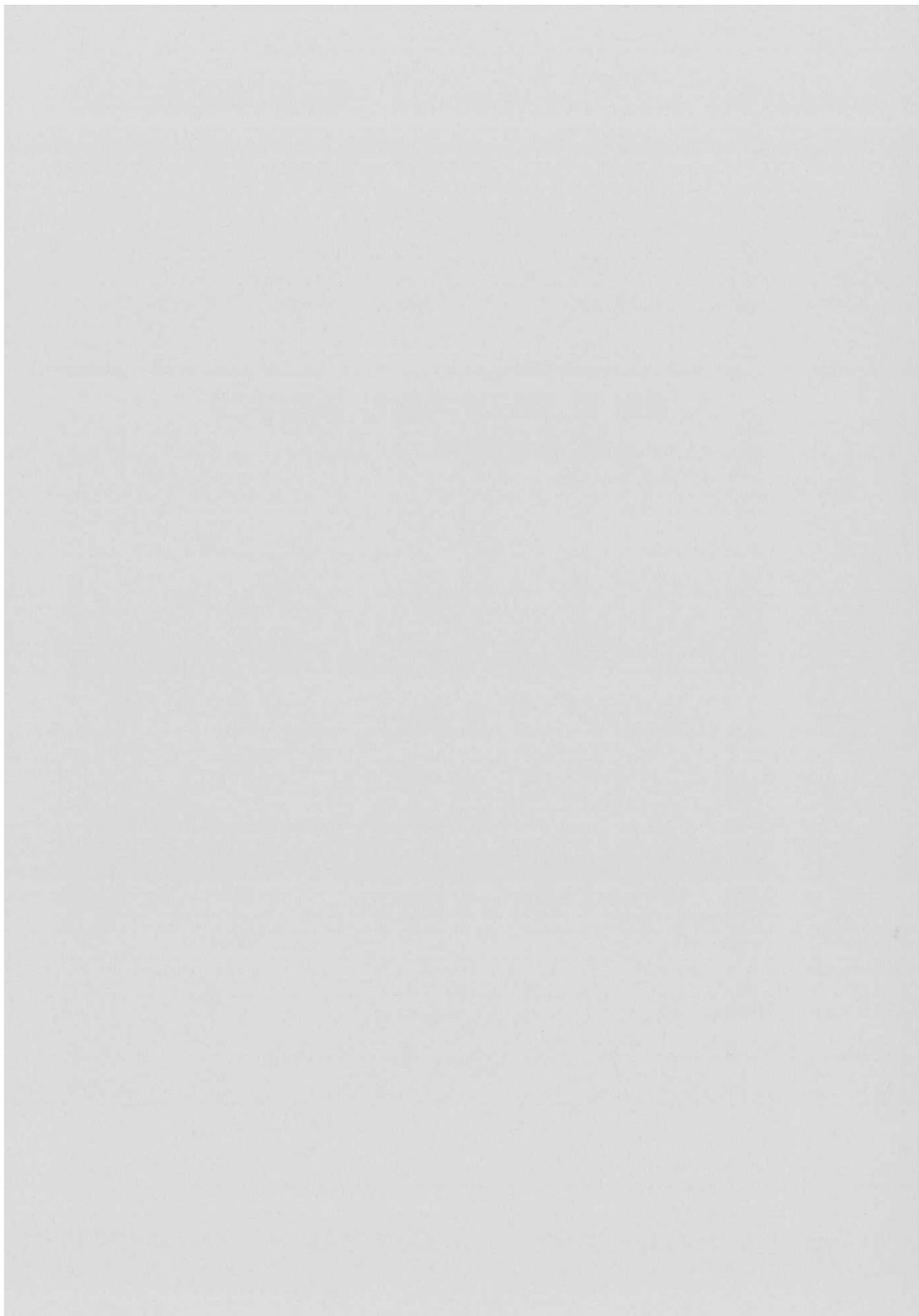
-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기자들이 점수까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처음 들어요? 왜 책임을 안 져요? 정보가 다 빠져 나갔는데...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일반 언론인들이 상임위원보다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점수는 우리가 당초에 기준을 말했듯이 650점 이상 되면 재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재론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각 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당초 최초 승인시에 낸 것과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일일이 위원들에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재승인 조건을 내는 것은 조금 순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승인 조건에 관한 것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은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의결은 19일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결은 당분간 보류하고 1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 수정 의결(2014. 3. 19.)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4 - 12 - 48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4. 3. 19.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4. 3.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

< 2014. 3. 19. (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1> 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1. 3~4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 승인
※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연합뉴스티브이('11.3.30) / (주)채널에이('11.4.20)
- '13. 9. 5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3. 9.30 재승인 신청서 접수(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티브이)
- '13.10.21 재승인 신청서 접수(주)채널에이)
- '13.11.29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 게재,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자막으로 공지
* '14.11.29~12.30까지 총 24건 접수
- '14. 3.10~14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총 5일 간)
* 심사기간 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14.3.12)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총 15인)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 야	성 명	현 직	추천인
심사위원장	오 택 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방송(3인)	류 춘 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통위원
	최 진 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하 주 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부기관
법률(3인)	김 병 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기관
	안 정 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외부기관
	이 상 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외부기관
경영·회계 (3인)	류 길 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방통위원
	배 기 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기관
	이 청 룡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부기관
기술(2인)	박 승 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방통위원
	차 지 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외부기관
시청자·소비자 (3인)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황 선 옥	소비자 시민모임 부회장	방통위원

나. 운 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4. 3. 10. ~ 3. 14. (총 5일)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3. 10일 (월)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3. 11일 (화)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의견청취 준비 등
3. 12일 (수)	사업자별 의견청취, 재승인 신청서류 및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
3. 13일 (목)	계량평가결과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3. 14일 (금)	심사의견서 의결

5. 심사평가 결과

○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음

- 총점 1,000점 만점 중 (주)조선방송 684.73점, (주)제이티비씨 727.01점, (주)채널에이 684.66점, (주)연합뉴스티브이 719.76점 획득

※ 재승인기준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 종편/보도)	(주) 조선방송	(주)제이 티비씨	(주) 채널에이	(주)연합뉴 스티브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273.35 (78%)	279.82 (80%)	271.30 (78%)	277.63 (79%)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131.19 (57%)	141.38 (61%)	127.21 (55%)	188.12 (67%)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103.18 (64%)	119.59 (75%)	108.00 (68%)	93.86 (72%)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47.28 (59%)	48.96 (61%)	47.20 (59%)	28.81 (58%)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45.03 (75%)	47.65 (79%)	45.40 (76%)	42.50 (71%)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21.79 (73%)	23.29 (78%)	21.87 (73%)	13.98 (7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15.26 (76%)	15.86 (79%)	15.39 (77%)	29.25 (73%)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51.65 (74%)	54.46 (78%)	52.29 (75%)	51.21 (73%)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 4.00	- 4.00	- 4.00	- 5.60
합 계	684.73	727.01	684.66	719.76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가. 종합소견

-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이 가능하므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이 필요함
-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종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제작 편성비율과 주시청시간대 외주 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음

나.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의견

- (주)조선방송) 계획 대비 0% 투자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주)제이티비씨)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ㄱ채널에이)**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동일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ㄴ연합뉴스티브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정보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책 건의사항

-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평가에 반영
 -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필요
-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 마련 필요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 랩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검토 의견

-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재승인 대상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 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붙임1> 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함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부분 과 관련하여 이행계획과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함
 - 이행실적 점검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함

8. 향후 계획

- '14. 3월 중 승인장 교부
- '14. 3월 말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4. 5월 중 재승인 백서 발행
- '14년 하반기 재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연중)

-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수정의결 반영)

구 분		내 용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재승인 조건	○ (공통)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공통)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공통)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사항	○ (주)조선방송) - 종편PP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주)연합 뉴스 티브이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사항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2014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4.3.31.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3개사와 2014.4.21.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3. 14.(금)

1. 종합소견

- (사업계획 이행실적)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분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등 방송사업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
 - 종편 3사의 재방비율이 높으며, JTBC를 제외하고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음
 - 다만, 국내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음
- (공적책임 및 공정성) 종편 3사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전략 수립과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 자체 심의 능력 강화를 위해 외부제작자를 포함한 방송인력의 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자체교육, 연수, 파견 및 외부 기관에서의 정기적 연수제도 운용 등)
-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 전략 등 향후 사업 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보임
- 다만 국내외 경제 상황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액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방송법상 3~5년간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 실적 점검 필요

2.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의견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주)조선방송	○ 계획 대비 0%대의 투자실적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균형 있는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3년간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추어 향후 5년간 예측 광고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 의문 ○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작시스템 구축 필요 ○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투자계획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투자계획이 미흡 ○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주)제이티비씨	○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청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루어져야 함 ○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 보도 담당 사장에게 인사권과 편집권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됨 ○ 재승인 신청서상 사업계획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상증자 성공이후에도 사업계획 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주)채널에이	○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인신공격과 막말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 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 제도의 효과가 의문시 됨 ○ 채널A의 방송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종편들과의 차별된 특성이나 투자 의욕이 보이지 않고 시사·보도에 의존하는 전략에 안주하는 것으로 보임 ○ 재승인 신청서상 광고 매출액(○○○○년 ○원, ○○○○년 ○원)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임 ○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시청자 권리보호 위원회의 권리침해 구제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주)연합뉴스티브이	○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 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국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기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 금액이 ○%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뉴스Y가 재승인 기간 중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서 환경설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IT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위성수신 시스템이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승인 신청서에는 해외진출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콘텐츠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심의제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 민원을 해결하고 심의제재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엄격히 시행할 것 ○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르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종편 사업자의 취지에 맞도록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고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

○ 개별사항

구분	내용
(주)조선방송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제이티비씨	○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주)채널에이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4. 정책 건의사항

☐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평가에 반영
-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필요

☐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

-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 사항

-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 마련 필요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마련

- 종편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 사업자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렐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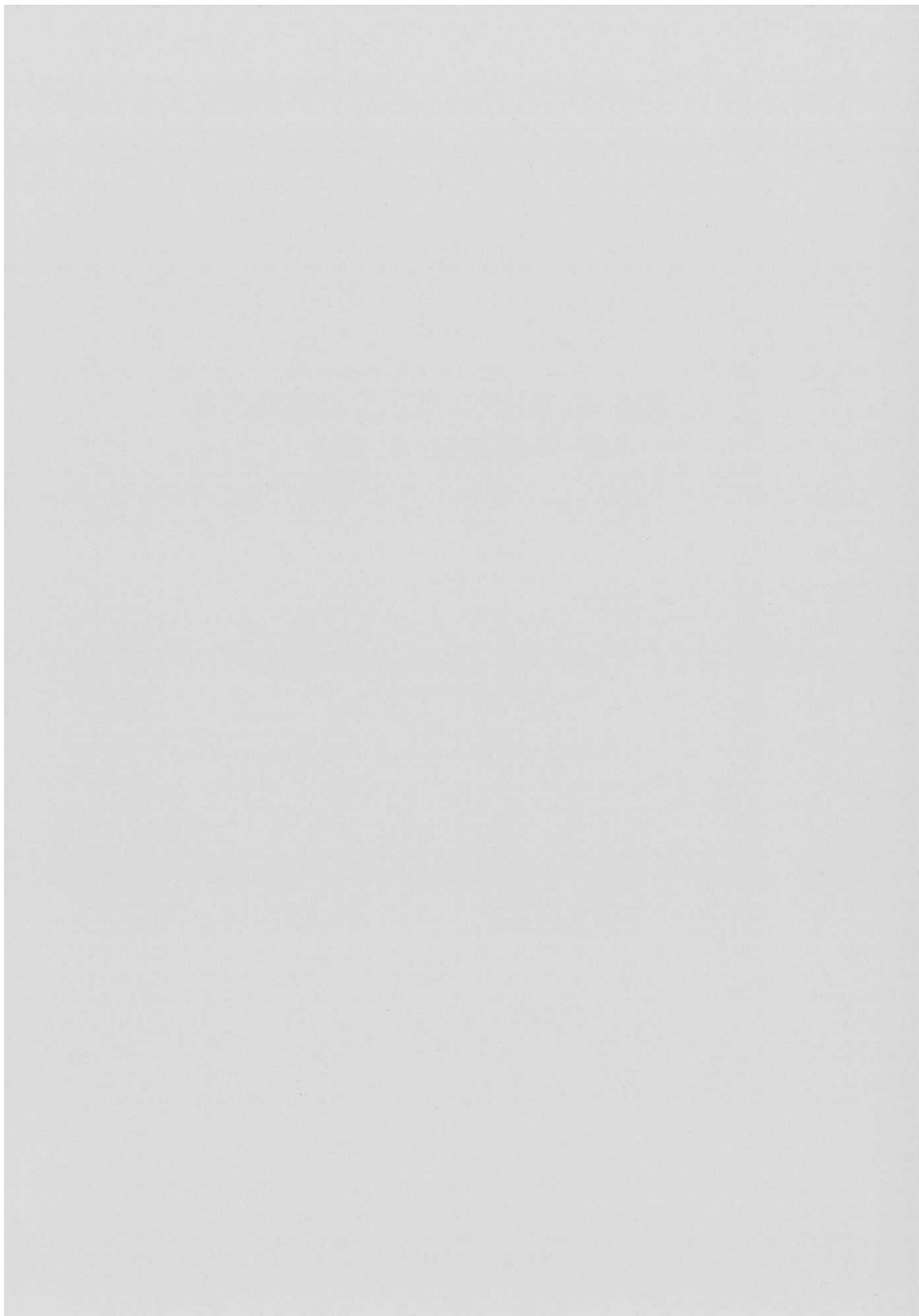
(붙임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종편/보도)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350)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350점/35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35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 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230/28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140점/18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45점/6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95점/120점)
	시청자 권익보호 (70점/80점)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25점/25점)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점/55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20점/20점)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20점/20점)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감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감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160/130)	기획·편성의 적절성 (70점/60점)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25점/20점)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점/40점)
	수급의 적절성 (50점/35점)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점/10점)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점/25점)
	제작·협력의 적절성 (40점/35점)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점/10점)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점/25점)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재정적 능력(65점/40점)	부채비율(25점/15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15점)
		총자산증가율(20점/10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기술적 능력(15점/10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5점/5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10점/5점)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30점/30점)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점/10점)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점/20점)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점/15점)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5점/5점)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10점/10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점/1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5점/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10점/10점)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이행여부 (30/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30점/2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10점/5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20점/15점)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20점/4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5점/15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점/25점)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70)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점/70점)	승인조건 이행실적의 적정성 (70점/70점)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 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감점)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수정 의결(2014. 3. 1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3. 19(수) 11: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 (2014-12-048)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주문과 승인조건 및 권고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및 (주)연합뉴스티브이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붙임1>입니다. 본문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재승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네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섯 번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을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여섯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다음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분야별 편성비율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중편PP의 이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으로 변경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조선방송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은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끝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국장, 지금 종편 과다(過多) 선정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사업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종편CATV의 콘텐츠 투자 부실이다, 또 재방비율이 많다, 보도비율이 과도하다는 것들이 전부 4개나 사업자를 선정했던 2011년의 방통위 제1기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제앙입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들이 광고 쟁탈을 위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광고시장과 방송시장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지상파조차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행정부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범죄적인 행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범죄적 행정을 3년 동안 시정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또 다른 2차적인 3년을 부여하는 의결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 당시에 2011년 3월 30일 종편 후속조치를 할 때 조선과 중앙만 신청을 하고 매경과 동아는 신청조차 못 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때 당시부터 종편사업에 참여하면 헛돈만 날리고 망신만 당한다, 그래서 주주들이 달아났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경제 규모나 국토 볼륨이 월등히 큰 나라에서도

지상파 포함해서 겨우 4개, 5개의 종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종전의 지상파 4개에 4개의 종편, 그래서 도합 8개가 성냥갑처럼 뿌려진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왜 했는가?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모르겠다, 다 해라’ 그러면 엄청난 혼란 이후에 시장이 정리할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으로는 묘수였을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는 지극히 타락이고 범죄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만 당시 오택림 법률자문관에게까지도 물었습니다. “당신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치열하게 따지기 싫은 판사가 절충적으로 대충 절반은 죄가 있고, 절반은 불쌍하니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고참 법관들의 가르침입니다. 방통위가 바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종편운영 3년이 지나고 국민의 눈높이와 온도는 들끓고 있는데 심사위원단은 ‘684점 이상이어서 3년 동안 더 영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 선정이나 기타 양평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민의 상식 수준과는 전혀 엉뚱한 의결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수 분 후에는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위해서도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파 2013년도의 재허가 심사가 마쳐진 것 알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전체적으로 수익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아무래도 광고시장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거기에 종편 4사도 악순환의 고리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김영관 지상파 과장에게 논문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상파 TV의 광고의 감소’ 그리고 ‘새로운 광고 수요 창출을 위한 몸부림’에 관한 논문을 제가 주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한국도 일본도 지상파가 이미 절정기를 넘어서서 현저하게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일부 학자들, 사사키 도시나오라든가 이런 저자들이 「TV소멸」, ‘텔레비전이 없어진다’라는 책을 4~5년 전에 이미 발표했고, 「TV소멸」이라는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 공무원들은 안 봤는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명약관화하게 벌어지는 눈앞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종편을 추가로 4개나 허가한 것입니다. 하나들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방통위가 하나나 둘 허가할 것이다’라고 상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4개를 허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물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신문사가 방송을 하면 빨리 망하고 안 하면 천천히라도 반드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들어 봤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들어봤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2008년에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사장이 한 이야기는 논문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부터 물경 3, 4년이 지난 2010년, 2011년에 종편을 추가로 4개를 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이러한 현장의 이야기를 논문에 인용하는 동안 과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방송의 미래를 계량하고 광고수지를 따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공무원들은 '모르겠다', '모처에서 시키는 대로 눈치 봐서 계수 맞춰서 4개 다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종편 과다 선정의 연원입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제2기 방통위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또 그 괴리를 메우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에서 오셔서 방청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서류심사가 15명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이렇게 왔으니 이대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평소 존경하는 김충식 부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초기의 허가 시에 적정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허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충분히 동의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범죄기관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기관에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정확하게 '범죄적인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래도 '범죄적인' 표현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범법적인 것'으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범법은 좀 아니지요. 하여튼 정책적인 미흡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평소 존경하는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한 행정에 대해서 범법적이다, 범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쫓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에서 사업자가 몇 개 필요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서는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한 사업자다, 두 사업자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실 수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몇 개 사업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정부가 사업자수를 정해서 지정을 하던 통신사업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공모방식으로 지원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안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회의 때 저도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것이 권고사항으로 부과된 사항 중에 '중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이렇게 문구가 최종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더 발전된 표현이라고 보고, 이런 정도 수준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중편들의 편성을 좀 더 바람직한, 국민들이 원하는 본래의 중편 목적에 다가가는 그런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중편PP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수치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봤을 때 서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3개사에게 전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중에 심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업자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건들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항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실무국과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일단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했었고, 또 지난번에 야당 측 위원님들도 많은 컨선(concern)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만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김대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 다소간에 이해 미흡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쉽게 이야기하면 통신회선은 많을수록 싸고 좋기 때문에 사업자도 다다익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채널은 많을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공익성과 관련한 행정의 기본 발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도와 교양이 결들여지는 종합편성과 같은 것은 과다 선정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헤아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워딩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중편을 4개나 선정한 것 자체가 우선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쭉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3년 지난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나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과 통신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기술의 발전이 이

루어지면서 다채널 멀티미디어 시대가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미디어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이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시청률은 높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의 반응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표출, 또 거기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종편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물론 지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몇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방송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나 봐야 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정말 저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당시에 문방위원장을 하던 정병국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편 선정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합편성채널로 신문사가 살아나려고 하면 시대착오다. 지금은 아이들도 먹을 것이 많아서 오리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은 먹지 않는데 지금의 현대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서 종편을 보겠는가” 명확하게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방송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마추어에 불과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전문으로 행정을 하고 국민의 입장을 지켜봐야 할 행정부가 간과했다, 물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실무자들이 간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 다시 재의결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 하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국장, 사업계획서 읽어보셨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에게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심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안 봤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과장, 사업계획서 읽어봤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니요, 안 읽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도대체 사업계획서를 안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보고자료를 낼 수 있지요? 그러면 국장, 과장은 뭐 했는데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심사위원들이 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사업계획서 정리하면서 사전에 심사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자료 검토하고 그리고 확인할 것 확인했지 않습니까? 과장!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이 보충사항들을 검토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실무자들 읽어봤네요?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거기에 빠진 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

○ 양문석 상임위원

- 실무자들이 읽어볼 때 보안서약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썼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보안서약서를 상임위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상임위원 비서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참고로...

○ 양문석 상임위원

- 처음에 상임위원한테 요구하고...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업계획서 누가 봅니까? 비서관이 봅니까, 상임위원이 봅니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은 국장과 과장이 지금 보고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도 안 보고 된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에게 넘기고 이것을 종합하고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자고 하니까 서약서를 쓰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두 번째, 국장 채점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채점표는 제가 이야기만 듣고 상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도대체 국장은 무엇을 알고 있는데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개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안 봤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과장, 채점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채점표 최종 본인에게 확인하기 전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과장이 보는 채점표를 상임위원이 못 봅니까? 과장이 보는 채점표를 상임위원이 못 봅니까?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알아서 보라고 대답하지를 않나, 채점표 아까
오전에 제가 분명히 대항목을 소항목별로 다시 채점표 세부를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각 개인별 채점표 이름 빼고 다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왜 못 가져온다고 했지요?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세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우선은 그 사항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세요. 왜 저에게 채점표 못 준다고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들은 5월 정도에 백서에 넣어서 공개할 내용이지

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사항이 공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은 가리지만 위원별 점수가 공개가 되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곤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 양문석 상임위원

- 보세요. 그 이야기 말고 또 채점표 못 갖다 준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지시로, 위원장 지시로!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 양문석 상임위원

-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설치법 제6조에 보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합니다. 설치법 제12조에 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내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려고 해, 내가 상임위원이야! 그러면 채점표도 안 보고 세부 채점표의 중간 총계도 모르고 당신들이 만들어 준 큰 덩어리 대항목 평가점수만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건 자체는 위원장이 위원회로 제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안건을...

○ 양문석 상임위원

- 안건을 위원장이 제출하는 법이 있습니까? 법에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위원장이 제출했는데 위원장이 제출하는 것은 안건이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가 국회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래서 지금...

○ 양문석 상임위원

- 국회에게 버티듯이 상임위원에게도 안 주는 겁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결하셔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사람아! 지금 의결하는 거야.

○ 홍성규 상임위원

- 양 위원님!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 홍성규 상임위원

- 말씀 좀 낮추셔서 하시라고, 예의를 지켜 가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 양문석 상임위원

- 국장!

○ 홍성규 상임위원

- 권고하건대 말씀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하세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 심의·의결의 기본이 뭐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가 국회 미방위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지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 의결 단위가 이 단위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이 채점표 달라, 그다음에 중간 통계내서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위반된 요구입니까, 아녜요? 정확하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난 기본계획 때에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양문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의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같이 하자고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때 결정한 내용이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해 왔던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채점표는 심사위원단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창조하셨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이야기는 과장이...

○ 양문석 상임위원

- 보십시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 양문석 상임위원

- 그제 우리가 왜 의결 보류했지요? 심사계획서나 관련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사무국에서 빠른 끝수를 부리면서 30분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이 아주 심플한 자료를 가지고 의결하라고 던져서 그것을 상임위원들이 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연기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채점표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제가 그제 방송정책국 기본적으로 못 믿는다고 이야기했지요? 자체적으로 보안도 안 되고 상임위원보다 기자들이 먼저 결과를 알고 있고,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데이터 조작됐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목별로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한 점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혐의들을 상임위원이 보고 확인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작없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수표를 안 줍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과장이 주겠다는 것은 또 됩니까? 의결하고 나서 주겠다는 것은 됩니까? 과장은 봐도 되고 알고 있어도 되고, 과장이 의결합니까? 과장이 의결하냐고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표>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말씀 다 하셨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본적인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자료를 위원장 지시든, 사무국 독단이든 자료를 안 주고 이 회의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회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잠깐만, 저도 말씀 좀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씀하십시오.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이 심사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舊 방송위원회 때부터 수십 년간 해 온 관행입니다. 아까 30분 전에 왜 이것을 내놓느냐 했지만 그동안도 늘 그래 왔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지상파 때도 그렇고 늘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상임위원들이 앞으로 직접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공개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엄청난 꼼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방통위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이 점수를 예를 들어 이것저것 공개하면 이름을 뺄다 하더라도 이것 보면 누가 한 것인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심사위원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느냐?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심사해 달라니까 심사를 못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심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점수부터 공개하자, 그러면 나중에 누가 심사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점수가 무슨 조작이 됐든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같은 현실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하나 저는 그저께 그날 의결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종편을 봐 주기 위해 심사기준들을 대폭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방송평가 점수를 350점으로 낮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강화한 것이지요. '13년 작년 지상파 재허가 때 400점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400점인 것을 350점으로 내린 것은 강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한 편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이렇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성의 적절성' 이것이 지상파 재허가 때에는 75점인데 160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강화한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다음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지상파 때 65점이었는데 이것을 80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강화한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봐야지요? 그다음에 지방 문제는 빼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도 50점을 70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9가지 항목 중에 강화한 것이 적게 보더라도 4~5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화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양 위원님이 과락이 아슬아슬한 점수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지상파나 이런 것 보통 재허가할 때 과락이 몇 점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40점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종편이 워낙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사전에 심사문제에 관한 논의를 했던 사전 연구반에서는 60점으로 하자는 건의가 있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점으로 늘렸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동안 40점으로 해 오던 과락을 50점으로 늘린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도 강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여기 점수 보면 50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 55점, 57점, 밑에 기획·편성 쪽도 보면 50점대는 없습니다. 과연 중편을 봐주기 위해 우리가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예단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것은 끝이 없는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번 일주일 동안 했던 심사위원회는 어떤 미흡한 점도 발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회할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무처가 보고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부관사항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이 정도에서 저는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아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찬반 여부를 묻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심사를 직접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심사 직접 하자가 아니고 심사 직접 하는 사람들의 체점표를 보자는 것과 심사 직접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 프라이버시를 이야기 하셨는데 심사표의 점수를 보자고 하고 이름을 빼고, 제가 전제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름을 빼도 다 아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심사표, 심사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름을 압니까? 14명인데...

○ 홍성규 상임위원

- 모르겠습니까? 양 위원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도 남지 않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모릅니다. 세 번째, 조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조작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점수들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작의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보고 깔끔하게 조작된 것 없다고 증명하면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채점표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간 합계, 총계 안 보여주면 의심은 조작으로 갑니다. 그런 위험을 왜 사무처가 자꾸 위원회 부담스럽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갖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내일 보면 무엇을 할 겁니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방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급자입니다. 상급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심의·의결의 영역 29가지 중에 일곱 번째에 있는, 설치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데 왜 당신들이 방해를 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누가 결정을 합니까? 상임위원이 달라면 쥐야지요. 누가 결정하는데...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상임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 양문석 상임위원

- 법이 결정해 놨지 않습니까? 왜 법이 결정해 놓은 것을 상임위원에게 안 줍니까? 언제부터 법 위에 국장, 과장이 있었는데? 지금 쥐요. 정회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데이터 달라고요. 그래야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표현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 소치올림픽처럼 사실은 일반적으로 평가한 부분과 특출나게 평가한 부분들이라면 어떤 특정의 심사위원들의 짐작이 다 갈만한 그래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앞으로 이런 심사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차후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서를 발행할 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식이었는데, 이것을 감춰서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인쇄돼서 나갈 경우에 개개인의 신분상 문제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이 꼭 위원들에게 못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이번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관행화됐을 경우에 아마 심사 아무도 안 할라고 할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상임위원은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것이지만...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의결 주체가 상임위원이면 당연히 그 자료를 궁금하지 않은 분은 안 봐도 되지만, 필요한 사람은 봐야 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상임위원들이 직접 심사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상임위원이 직접 심사하자고 저보고 심사위원장을 시켜 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양 위원만 하려고 했습니까? 저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지요.

○ 김대희 상임위원

- 그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거나 사후적으로라도 백서에 남기는 형태로 공개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시점이 지금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 양문석 상임위원

- 좋습니다.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심사는 조금도 제가 볼 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제대로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찬반을 물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또 찬반하면..., 그것은 제가 찬반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으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찬성하시면 되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위원장께서도 그리고 부위원장께서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 심사위원 15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가 가려낸다고 하니 참 진짜 양문석이 뛰어나기는 뛰어난가 봅니다. 좋습니다. 개별심사 채점표 말고, 그러면 보고서에 나온 심사사항 <1>~<9>번까지 세부항목 채점표 주십시오. 그것은 프라이버시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니요. 자꾸 채점표 달라, 그것을 가지고 이 회의를 들어가지 마시고....

○ 양문석 상임위원

- 채점표가 아니라....

○ 홍성규 상임위원

- 여태까지 심사와 관련해서 채점표를 미리 공개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 지상파 심사 때 감점 문제 등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에 있었지 않았느냐는 아규(argue)가 있어서 나중에 2013년에 그것을 보정한 사례가 한 번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잡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잡음이 있어서...

○ 홍성규 상임위원

-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일을 굳이 지금 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홍 위원님, 잡음이 있어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사항목 대항목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이 230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에 140점, 시청자 권익보호 70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20점, 관련위반 사례, 감점 그러면 이 5개를 제가 보고 항목별로 평가해야 하는데 대항목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이 점수만 보고 회의를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이것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프라이버시...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니지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왜 둘니까? 보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상파를 심사해서 OBS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4개 회사가 다 점수가 커트라인에 걸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배 나라, 감 나라 해서 그것을 뒤집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왜 합니까? 상임위원들이 하면 되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대부분이 백서에 공개될 일이고, 또 정보공개청구로 우리가 시달림을 받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뒤집자, 그다음에 꼬투리를 잡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 홍성규 상임위원

-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 홍성규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니, 잠깐만요.

○ 홍성규 상임위원

- 나중에 심사 계속할 건데 만약에 점수를 만날 공개할 것 같으면 누가 심사합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큰 항목은 점수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항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토론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다른 방식으로 못 알아듣는 체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첫째로 지금 홍성규 위원님께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심사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들 포함해서 누구도 국민의 상식이나 눈높이에 맞는 심사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결과는 불편부당했는데 결과는 산으로 갔다, 이러한 껍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이 확정적인 의결을 앞두고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종편 4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저서 대부분의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등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심사자료를 가지고서 이 방통위원회 2기의 최종적인 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자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사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이것이 전일부터 심사도 해 봤고 또 심사를 평가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심사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한 점도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의결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자리에서 의결하든 연기를 하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소항목 점수를 상임위원이 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이유가 진짜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좋아요. 안 봐요. 다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 봅시다. 공정성 확보방안이지요? 여기에 TV조선이나 JTBC나 채널A가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공정성 확보방안을 이야기한 것은 선거방송자문단, (주)제이티비씨 보도자문단, (주)채널에이 그냥 시청자 참여기회 확대, 공정성 확보방안에 있어서 외부 인사들이 1명도 없습니다. 자문단은 의결기구도 아니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의견을 냈는데 이것 왜 조건부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이런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자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에 내부 점검시스템 구성·운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방통위에 내고, 방통위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된 범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 실적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넣어놓았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외부가 없이 안에서 계속해서 근친상간적 공정보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관행을 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관련 법령 위반사례, 회사별로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각 사별로 몇 점 감점됐는지, 왜 감점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점수는 공정성 밑에 세부항목으로 감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공개를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상임위원이 이야기하는데...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을 아까 세부심사항목 자료를 드리면 바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큰 자료 못 주겠다고 흥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고 심의하려면 이것을 내가 알아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꾸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 홍성규 상임위원

- 무엇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위반 법령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감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량적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량적으로 평가됐는지 제가 점수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회 종합소견에 보면 아주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전체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흥분을 합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첫 번째, 방송의 특히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심사위원 전원의 소견으로 써 놓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김 과장, 알다시피 이 배점이 230점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230점 중에서 비계량이 얼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230점이 비계량이고 그중에서 계량으로 감점되는 부분이 따로 혹시 감점이 되면 거기에서 계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심사위원단들이 백번 주장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특히 종합소견에 첫 항목에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해 놓고, 왜 비계량 평가는 230점을 0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것을 부여해서 통과를 시켰느냐, 이러한 심사 자체의 논리적인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식으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의견들을 통상적으로 평가 항목 부분에서 평가표가 있고 다음에 심사의견서가 붙어 있는데, 심사의견서를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조금 많이 쓰는 분도 있고 적게 쓰는 분도 있고 그 차이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거나 점수를 엄혹하게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뒷말을 이렇게 붙이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형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어정쩡한 집행유예 판결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점수는 후하게 주고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적책임과 공공성 실현에 노력해야겠다, 특히 노력하라, 그다음에 승인유효기간도 최소화하라고 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종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상임위원장

- 재방비율 높은 것에 대한 감점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항목에 직접적으로 감점을 계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없고, 그것이 반영되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들이 비계량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심사의견서에 나온 것과 점수와도 안 맞고, 거들 이야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그동안 저급한 용어로 이상한 출연자들 세워서 방송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그리고 방심위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을 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종편의 재심사, 또 추가로 3년 영업을 다시 재승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 홍성규 상임위원

-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점에서 심사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늘 어느 나라나 어느 방송이나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양 위원이 우려하는 점들을 조건에 좀 더 넣는다는지 이런 데 대한 논의라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논의를 하려면...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이 심사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홍 위원님, 절대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감점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감점처리가 몇 점 정도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이 처리가 됐고, 그 대상이 몇 점 정도 처리가 됐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이후에 심사기준표를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제기가 뒤로 넘어가서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인 심사기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사기준을 하는데 몇 점 감점됐는지, 무엇을 감점시켰는지를 모르고 심의하려니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또 포기하고 넘어갑시다. <3>번...

○ 홍성규 상임위원

- 또 있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제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과 그다음에 기획편성의 적절성인데 이것이 70점입니다. 데이터 좀 봅시다. '13년까지 TV조선이 보도 관련 편성을 24% 약속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6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해서 4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본적인 평가는 이 사람들이 냈던 사업계획서가 떨어진 두 사업자의 실력 여부와 무관하게 철저하게 평가된 것이지요. 자본금 규모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 인사의 여부와 무관하게, 말 그대로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를 평균 보도 관련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38%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제이티비씨는 23% 보도하겠다고 했다가 18.1%가 나왔습니다. (주)채널에이는 23.5% 하겠다고 해서 33.1%가 나왔습니다. 38%, 33%가 지난 3년의 평균입니다. 중편 이슈 중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보도 편향적 불공정성 이것 다 빼고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고 끊임 없이 지적되어서 했던 3년의 평균 수치가 TV조선 38%, (주)채널에이 33%, (주)제이티비씨 18% 이것 때문에 지난 3년이 나라가 들쭉거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편성계획을 보면 TV조선 2014년 47.6%, (주)제이티비씨 22.1%, (주)채널에이 38.9%를 하겠다고 합니다. 5년 평균 TV조선 41.8%, (주)제이티비씨 23.5%, (주)채널에이 31.8%, 그 사람들이 보도편성, 보도프로그램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38%, 18%, 33%보다 더 높은 편성계획을 내놓았

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점수를 알자고 하느냐 하면 홍 위원님, 기획·편성의 적정성이 우리 배점표에 보면 70점입니다. 그러면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이 편성의 불균형이 도대체 몇 점을 받았을까? 어떻게 가장 심각했던 지난 3년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계획서를 던져놓았는데, 그리고 애초에 약속했던 자신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지난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보다도 더 높은 계획을 내놓았는데 여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누구나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락 50점을 넘는데 여기 점수가 일정 부분 포함됐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점수 알려 주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안 된다, 제발 사무처 계속해서 그렇게 버티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 방해했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정능력 봅시다. 재정능력 여기도 왜 점수를 봐야 하느냐 하면 재정능력...

○ 홍성규 상임위원

- 고소할 때 저도 할 겁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예, 아니요. 그건.... 초점 좀 흐리지 마십시오. <4>번 80점인데, 재정적 능력이 65점이고, 기술적 능력이 15점입니다. 그러면 65점의 재정적 능력이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그것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약서 쓰고 본 데이터입니다. TV조선 애초에 약속했던 투자금액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금액 1,180억원입니다. 그런데 3년 평균이 1,180억원이었는데 3년 동안 매년 투자한 금액은 318억원입니다. (주)제이티비씨 1,740억원이었는데 투자한 금액은 770억원이었습니다. (주)채널에이 1,270억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44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투자실적 퍼센티지가 뚝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당초 대비 TV조선 26% 투자했습니다. (주)제이티비씨 44%, (주)채널에이 34% 사무국이 안 만들어 줘서 이것 다 우리 방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종편의 3대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제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콘텐츠 다 양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려고 해서 만든 것이 종편입니다. 그런데 평균 26.8%, 44.2%, 34.7% 원래 약속한 대로, 그러면 이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뽑았는데 이것 다 취소사유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낸 계획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은 TV조선이 연평균 320억원을 3년에 썼는데 이번에 뭐라고 내놓았느냐 하면 5년 평균으로 매년 670억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300억원대를 썼던 TV조선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 덩어리가 떨어졌는지, 미디어 환경이 확 바뀌었는지, 광고가 100%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됐는지, 매체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670억원을 썼습니다. (주)제이티비씨는 2,000억원을 썼습니다. (주)채널에이는 860억원을 썼습니다. 다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이티비씨 연평균 쓴 것이 770억원인데 2,000억원을 쓰겠다 하고, 440억원 정도 쓰던 (주)채널에이가 860억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많이 쓰겠다, 많이 투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적정성에 대한 부분, 재정적 능력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OBS 잡을 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끊임없이 증자계획, 투자계획 받아오라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승인해 주더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2배가 튀었다는 것은 황당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돈으로 5년 평균 제작비를 300억원 하던 데가 600억원을 쓰지? 그리고 도대체 심사위원들은 이 항목에서 65점 배점을 가지고 계량인데 어떤 점수가 나왔을까? 과장, 국장 안 궁금합니까? 상임위원이 궁금해 하면...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첨부 3>에 보시면 부채비율, 자기자본금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3개 지표에 대해서 각각 25점, 20점, 20점씩 계량으로 점수를 환산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더더욱 그 점수가 더 궁금하겠네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점수는 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 못 밝혀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도 OK 했는데 홍성규 위원이 반대한다고 지금 못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 배점이 15점입니다. 심사기준표 때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1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던 MB정권의 주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사무처가 안 만들어 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2013년 TV조선이 몇 명을 고용했느냐 하면 정규직, 계약직 합해서 394명, (주)제이티비씨 457명, (주)채널에이 319명 합해서 1,170명입니다. 이것이 2011년보다 한 20~30명씩 늘었습니다. 2011년 처음에 시작할 때 첫째에 1,009명, 그것이 차츰차츰 늘어서 거의 170명 늘었네요. 대단하네요. 18,000명을 약속했다가 1,170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인력계획 3년 보고 18,000명 가지고 월가알부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2018년까지 각 사별로 몇 명의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담한데, TV조선 앞으로 5년 동안 64명 더 뽑겠다고 합니다. (주)제이티비씨 100명 더 뽑겠다고 합니다. (주)채널에이 163명 더 뽑겠다고 합니다. 합해서도 1,500명이 안 됩니다. 18,000명 고용창출이라고 국민들에게 온통 사기 쳐 놓고, 1,500명도 일자리 창출 못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기가 차다, 그러면 이것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중편 만들었는데 일자리 창출하려는데 겨우 1,500명도 못 되는 현재까지 1,170명밖에 안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야 하고 향후 전망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5점에 3사가 몇 점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물어도 됩니까? 몇 점 나왔지요? 안 가르쳐 줄 것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행여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편성비율, 투자계획, 그다음에 일자리 계획 이 모든 이행여부를 평가하면 이것은 0점이 아니라 배점이 70점인데 상식적인 사람이면 마이너스 70점을 주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이행여부를 보는 것인데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차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벽 치니까 안 들릴 것이고...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됐습니다. <9>번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한 번 해 봅시다. 마이너스 4점 나왔습니다. 시정명령 3년 동안 몇 번 내렸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별로 약간 다르지만 (주)채널에이는 2건이었고, 다른 사는 1건씩이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1건인데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했는데 점수는 마이너스 4점으로 똑같습니다.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점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은 (주)채널에이 것은 소송이 제기된 삼양사건 부분이 감점에서 빠졌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소송을 제기해서 점수를 뺀다는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심사위원 의견서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심사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책 건의한 내용입니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합시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만 합시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것이 왜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아, 거꾸로 되어 있네요. OK! 이들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제가....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정도 합시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4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도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무처 초안이 무엇입니까? 4점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초안 말입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무처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시정명령 1회에 4점으로 하자고 어느 심사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입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아마 전로부터 해 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 2013년도의 관행이 지상파도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왕 시간 주는 것...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아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 양문석 상임위원

-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4점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중이면 심사 앞두고 받는 6개월이나 1년 전에 어떤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다 법원에 계류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사법부 판단 들어서 행정 했습니까? 우리가 의결하는 것 다 물어 보지요. 언제부터 사법부 판단 들어서 의결했습니까? 우리가 의결해야 사법부가 인용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결한 것인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제안서를 갖다 던져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부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조건부에 무엇을 넣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보도·편성 영역을 TV조선 48%로 올려놓았는데 전체적으로 30% 이하로 해야 장르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저는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획, 분기별 투자계획을 끊임없이 점검해라, 평균 300억원 쓰다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평균 600억원 쓰겠다는데 투자계획 분기별로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니 제가 본 사업계획서와 채점과 아주 비상식적인,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불량품을 세상에 내놓을래, 그렇지 않으면 재심의할래라고 저에게 위원장님이 안 물으시겠지만 물으신다면 재심의하자, 도대체 부끄러워서 저는 이 내용을 더 이상 심의·의결 못 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양문석 상임위원 퇴장)

○ 이경재 위원장

- 재심의하자고 제가 결론 낼 지 어떻게 알고 미리 나갑니까? 홍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까지 양 위원이 쪽 말씀하시고 퇴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홍성규 상임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심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회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잠깐 말씀 드리면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나 감점의 근거는 저희들이 다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속기록도 다 공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한 점에 의혹도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만 오늘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항목 정도만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이지, 세부심사항목 부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논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는 결국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당연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심사위원들의 채점을 밝히려는 부분은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개해도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전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야기했고, 홍성규 위원께서 이것은 전례를 만들어서 곤란하다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양문석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과거에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사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점수 등을 다 감안해서 기준점을 충분히 넘는 점수가 이미 나왔고 과락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재승인하는데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재승인 조건은 이미 되어 있고 권고사항에서 당초 사무처에서는 ‘중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이렇게 공통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방송의 보도채널에 대한 편성비율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그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수정하자는 김대희 위원과 홍성규 위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께서 반대를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권고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전인데 2011년 3월 28일 속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합당한 논리를 주장하고 또 국민 민복을 위한 양심의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다수결의 이름으로 유린되고, 또 3:2라는 힘으로 꺾박하는 이런 상태에서 3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참 착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모순투성이에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부실심사를 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서글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의결에 제가 동참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위해서나 또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퇴장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앉아계셔서 기권하시지요.

(김충식 부위원장 퇴장)

의견개진을 다 하셨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였고 걱정을 많이 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편 당초에 약속한 투자나 균형 있는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한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를 왜 이렇게 매겼고, 예를 들어서 아까 4점 이야기도 해 주셨고 왜 4점을 감점했고, 왜 3점이 아니고 4점이고, 왜 5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로 그 심사위원 전문가의 식견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무슨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입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점수공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기하신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충정은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마치 사무국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공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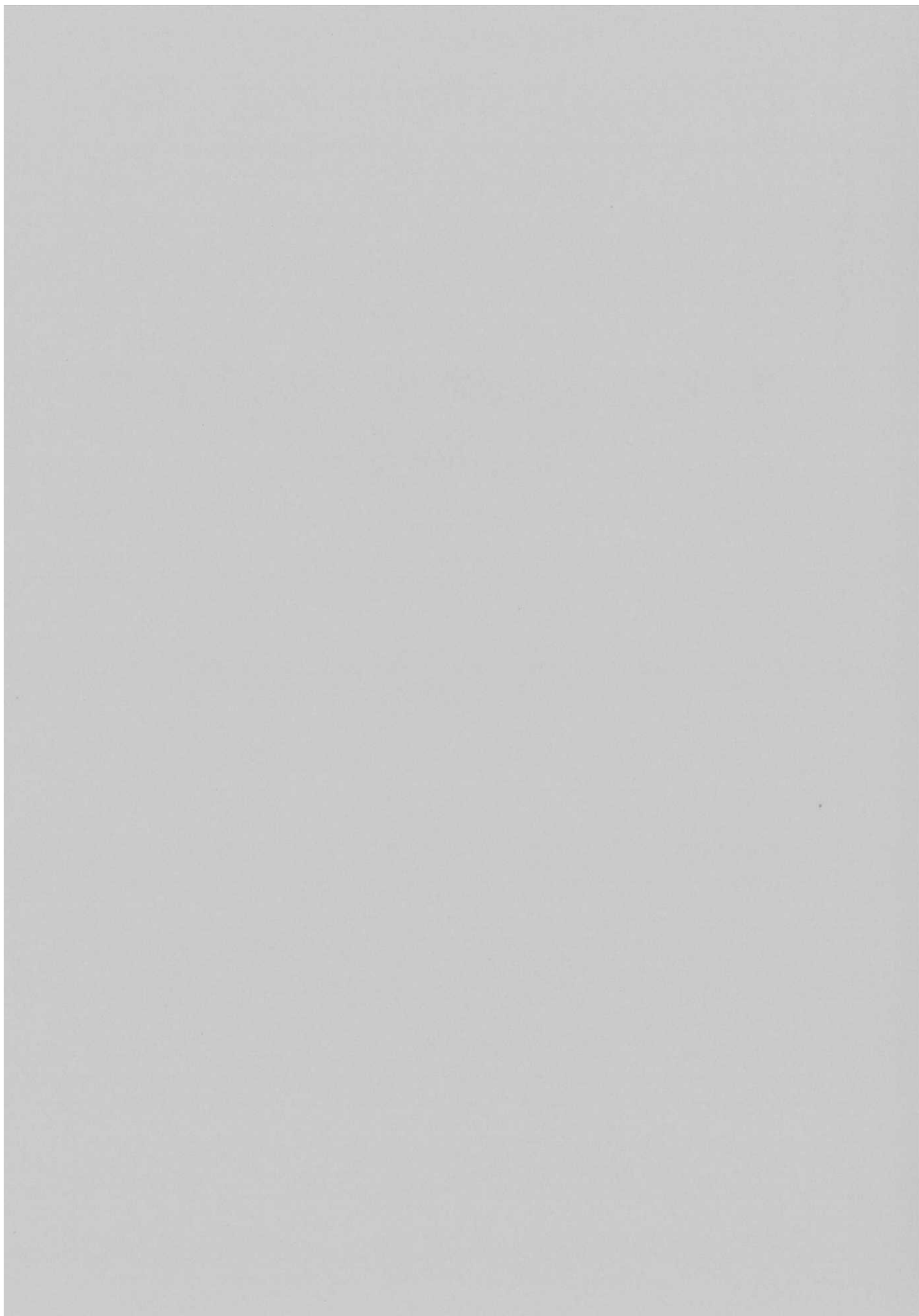
○ 이경재 위원장

-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일부 언론들이 평가기준을 약화시켰다, 또는 심사위원들의 구성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거에 전례 없이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도 도중에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중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 후임 위원장 선출도 야 측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위원장을 채택했고, 또 일곱 분은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추천한 것도 3:4로 이것은 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오히려 더 후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종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모든 방송들이 과거 케이블TV도 5년 동안에 한 70~80%가 다 망하듯이 아주 초기 단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청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편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붙여서 3년간 재승인하는 이 안에 대해서 권고사항 중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공통부분을 (주)조선방송에 추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

Ⅷ.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주)조선방송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주)제이티비씨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주)채널에이	재승인	2017년 4월 21일
보도전문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 (접수기간) 2013. 11. 29. ~ 12. 30.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접수결과) 총 24건
-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

